

의안
번호

38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385호
제 출 자	오중균 의원 18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한상규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며, 장기재직휴가 확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정비
- 나. 공무원의 사생활보장 신설(안 제13조)
- 다.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7조제4항)
- 라. 생일특별휴가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 7. 2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규정한 본 조항을 정비하고,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및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사생활보장)에서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사생활 보장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와 9개 구의회 복무 조례에 사생활보장(휴식권 등 보장)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17조 1항 별표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등 경조사 휴가를 장례참석기간 등 현실성을 반영하여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안 제17조의(특별휴가)4항에서는 특별휴가를 재직기간별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최근에 발생 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특히, 의회 직원의 일의 업무능률을 위하여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범위를 확대 하였음.
- 안 제17조(특별휴가) 6항에서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의회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또한 성북구도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제16 (특별휴가)안건 으로 제출함

- 안제 17조제8항에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대상 아동의 연령을 완화하는 경조사휴가를 확대하였으며,
- 기타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고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불 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또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끝.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

집중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